

서 면 답 변 서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소 속 | 평창군의회 | 질문위원 | 이 만 재 위원 |
| 답 변 자 | 평 창 군 수 (기획감사실장) | 답변일자 | 2008. 11. . |
| 회 의 | 제15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행정사무감사특위 | | |

질문요지

- 지방채무현황을 제출하기 바람.
- 장평 가축시장 부지 평창축협 매각금액

답변내용

[지방채무현황]

- '08. 11월 현재 지방채무액은 11,139백만원으로 원금 8,886백만원, 이자 2,253백만원으로
 - 일반회계 7건에 7,218백만원(원금 5,309백만원, 이자 1,909백만원)
 -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건에 3,921백만원(원금 3,578백만원, 이자 343백만원)입니다.

[장평 가축시장 부지 평창축협 매각금액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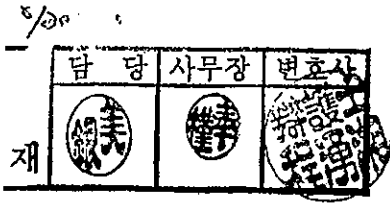
- 평창군은 장평 가축시장 부지를 평창축협에 당시 감정가격인 40,473,600원에 매각하였음.

붙 임 : 1. 지방채무 현황 1부
 2. 판결서 사본 1부. 끝.

지방채무현황 (2008년 1월 현재)

[단위:천원]

| 시 | 명 | 명 | 발행 년도 | 발행조건 | | | 발행액 | | | 상환액 | | | 채무잔액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| | | | 거치/상환 | 방식 | 이율 | 합계 | 원금 | 이자 | 합계 | 원금 | 이자 | 합계 | 원금 | 이자 | |
| 총 | 발 | 회 | 계 | | | | 29,769,460 | 20,079,000 | 9,690,460 | 18,630,261 | 11,192,380 | 7,437,881 | 11,139,199 | 8,886,620 | 2,252,579 | |
| '06 수해복구 | | | | | | | 10,751,912 | 8,131,000 | 2,620,912 | 3,533,888 | 2,822,280 | 711,608 | 7,218,024 | 5,308,720 | 1,909,304 | |
| 대외문화체육관광건립 | | | 2007 | 5년/10년 | 고정 | 4.0% | 7,050,274 | 5,000,000 | 2,050,274 | 150,274 | 0 | 150,274 | 6,900,000 | 5,000,000 | 1,900,000 | |
| 진부보건지소신축 | | | 1998 | 2년/10년 | 고정 | 3.0% | 349,500 | 300,000 | 49,500 | 318,600 | 270,000 | 48,600 | 30,900 | 30,000 | 900 | |
|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| | | 1998 | 2년/10년 | 고정 | 3.0% | 349,500 | 300,000 | 49,500 | 318,600 | 270,000 | 48,600 | 30,900 | 30,000 | 900 | |
| 진부도서관건립 | | | 1998 | 2년/10년 | 고정 | 3.0% | 2,446,500 | 2,100,000 | 346,500 | 2,230,200 | 1,890,000 | 340,200 | 216,300 | 210,000 | 6,300 | |
| 평창하수도사업 | | | 1998 | 2년/10년 | 고정 | 3.0% | 349,500 | 300,000 | 49,500 | 318,600 | 270,000 | 48,600 | 30,900 | 30,000 | 900 | |
| 평창하수도사업 | | | 1988 | 5년/15년 | 고정 | 3.0% | 99,726 | 61,000 | 38,726 | 95,549 | 56,940 | 38,609 | 4,177 | 4,060 | 117 | |
|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| | | 1989 | 5년/15년 | 고정 | 4.0% | 106,912 | 70,000 | 36,912 | 102,065 | 65,340 | 36,725 | 4,847 | 4,660 | 187 | |
| 웅평상수도사업 | | | | | | | 19,017,548 | 11,948,000 | 7,069,548 | 15,096,373 | 8,370,100 | 6,726,273 | 3,921,175 | 3,577,900 | 343,275 | |
| 평창상수도시설확장 | | | 1989 | 5년/15년 | 고정 | 4.0% | 89,350 | 60,000 | 29,350 | 85,190 | 56,000 | 29,190 | 4,160 | 4,000 | 160 | |
| 계촌상수도신설공사 | | | 1993 | 5년/10년 | 고정 | 5.0% | 1,553,817 | 1,000,000 | 553,817 | 1,528,503 | 975,000 | 553,503 | 25,314 | 25,000 | 314 | |
| 웅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| | | 1994 | 5년/10년 | 고정 | 5.0% | 153,460 | 100,000 | 53,460 | 140,492 | 87,500 | 52,992 | 12,968 | 12,500 | 468 | |
| 도암상수도시설확장공사 | | | 1996 | 5년/10년 | 고정 | 6.1% | 1,639,183 | 1,000,000 | 639,183 | 1,397,037 | 775,000 | 622,037 | 242,146 | 225,000 | 17,146 | |
| 도암상수도시설확장공사 | | | 1997 | 5년/10년 | 변동 | 5.4% | 9,083,597 | 5,000,000 | 4,083,597 | 6,709,465 | 2,875,000 | 3,834,465 | 2,374,132 | 2,125,000 | 249,132 | |
| 웅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| | | 1997 | 5년/10년 | 고정 | 2.5% | 1,515,000 | 1,200,000 | 315,000 | 976,321 | 690,000 | 286,321 | 538,679 | 510,000 | 28,679 | |
| 웅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| | | 1997 | 2년/10년 | 고정 | 4.5% | 1,419,082 | 1,000,000 | 419,082 | 1,314,582 | 900,000 | 414,582 | 104,500 | 100,000 | 4,500 | |
| 웅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| | | 1999 | 2년/10년 | 고정 | 4.5% | 1,381,547 | 1,000,000 | 381,547 | 1,168,047 | 800,000 | 368,047 | 213,500 | 200,000 | 13,500 | |
| 웅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| | | 1999 | 2년/10년 | 고정 | 4.5% | 1,381,547 | 1,000,000 | 381,547 | 1,168,047 | 800,000 | 368,047 | 213,500 | 200,000 | 13,500 | |
| 웅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| | | 1999 | 2년/10년 | 고정 | 4.5% | 1,381,547 | 1,000,000 | 381,547 | 1,168,047 | 800,000 | 368,047 | 213,500 | 200,000 | 13,500 | |
| 웅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 | | | 1999 | 2년/10년 | 고정 | 4.5% | 800,965 | 588,000 | 212,965 | 608,689 | 411,600 | 197,089 | 192,276 | 176,400 | 15,876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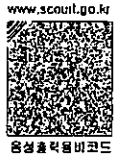


2007가합448

판 결 서

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

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

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07가합448 손해배상(기)

원 고 김종철
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404-13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용균

피 고 평창군
대표자 평창군수 권혁승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상

변 론 종 결 2008. 7. 17.

판 결 선 고 2008. 8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98,37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8. 28.부터 2008. 8. 1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

3.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052,08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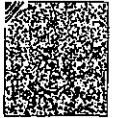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기부채납

원고는 피고에게, 1984. 4. 9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을 "기부의 목적 : 평창군 시범경매가축시장 설치 부지용", "기부조건 : 본 토지를 기부의 목적 외에 사용할 시에는 원상복구 및 소유권을 환원조치 하실 것"으로 정하여 기부채납(이하 '이 사건 기부채납'이라고 한다)하기로 상호 약정하고, 1985. 8. 6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, 조건부 증여라는 사실을 등기하지는 아니하였다.

나.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

피고는 1985. 6. 22.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한우 등의 경매시장인 가축시장(이하 '이 사건 가축시장'이라고 한다)을 개설한 후 매월 5, 10, 15, 20, 25, 30일을 장날로 정하여 경매 또는 증개 방식으로 거래를 알선하고 매매대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방법으로 가축시장을 운영하여 왔다.



2) 평창축협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08. 3. 6. 이 사건 가축시장을 2008. 5. 15.부터 송아지 경매시장으로 월1회 개장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하고, 2008. 4.경 이 사건 가축시장 울타리에 그러한 내용의 공고문을 붙여놓았으나, 개장에정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장을 위한 추가적인 진행상황도 없는 상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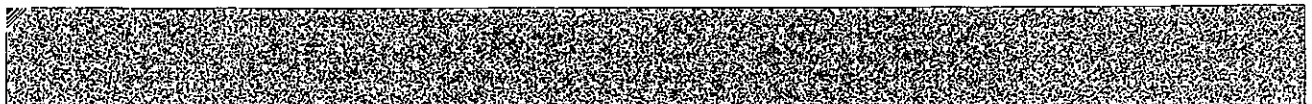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제5, 6, 7호증의 각 1 내지 3, 제8호증의 1, 2, 제10호증, 을 제1호증의 1 내지 6,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증인 이석래의 증언,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, 피고 및 평창축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원고 대리인이 2008. 3. 13.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'평창축협 조합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이 사건 가축시장의 재개장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재개장 후 운영이 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'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, 원고 대리인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원·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위 증인 이석래의 증언에 의하면, 평창축협의 조합장인 이석래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축시장의 재개장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가축시장을 확정적으로 재개장할 것이라고 증언한 바 없으므로,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내용

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부지라는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 및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고, 그 이후 이 사건 가축시장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나, 피고가 이 사건 기부채납에서 정한 조건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채 평창축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반환의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가축시장이 일시 중단되어 있을 뿐이고 확정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며,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부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.

나. 판 단

(1) 조건의 성취여부

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기부채납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이므로 그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축시장은 2004. 3.경 그 운영이 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계류대 및 경매장 건물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, 평창축협은 2000. 이후부터 문전거래 허용에 따른 가축시장 출장 기피 현상과 인근 횡성가축시장의 이용증가에 따라 출장두수가 감소하여 이 사건 가축시장의 휴장과 개장을 반복하다 2004. 3.경 출장두수가 전혀 없어짐에 따라 가축시장의 운영이 자연적으로 중단되었고,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축산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산업 및 유통 구조적인 문제와 이 사건 가축시장 인근에 선호도가 더 높은 횡성가축시장을 두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현상이며, 이



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.

(3)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, 원고가 조건성취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피고의 앞서 본 처분행위로 인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,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된 때라고 할 것인바, 기부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. 3.경이고, 이 법원의 감정인 윤용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의 2004. 3. 당시의 시가는 합계 898,371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(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 점에서 이유 없다).

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898,371,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.

(4) 피고의 공제 주장

피고는,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부채납 조건 중 하나인 '가축시장 내에서의 식당운영'을 10여년간 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으므로,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식당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기부채납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키주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의 식당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



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898,37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. 8. 28.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. 8. 1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확장현 _____

 판사 이종민 _____

 판사 유효영 _____





별지

목 록

1.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17-2 잡종지 2165㎡
2.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17-3 잡종지 2506㎡
3.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17-11 잡종지 1653㎡. 끝.





정본입니다.

2008. 8. 19.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

법원주사보 손 소 을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(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